

국가경찰위원회 법적지위 관련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 법 조 사 관 **이 송 림** Tel.6788-4482/Fax.6788-4569 E-mail: leesonglim@assembly.go.kr



본 조사회답서는 국회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오직 의정활동을 위해서만 활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 질의 요지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성격 등

(회답일 2022.08.03.)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관련 법령 검토 및 소관 부처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의뢰 등

■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행정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와 행정위원회가 아닌 위원회(자문위원회 등)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위원회 분류 방식은 상이하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행정기관 위원회를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하고 있으며(국가경찰위원회의 경우 자문위원회로 분류),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또한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하되자문위원회는 위원회 의결의 행정기관 기속 여부에 따라 의결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인의결위원회로 세분하고 있다.

법제처는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에 따르면, 행정기관 위원회를 행정위원회와 행정기관위원회가 아닌 위원회(자문위원회 등)로 구분하되 행정기관 위원회가 아닌 위원회는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와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로 세분하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성격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경찰법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명시(제18조제2항)하고 있는점을 참고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성격과 업무의 독립성 여부 등을 법률에 명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통한 답변서를 첨부하였다.

■ 목차

1. 국가경찰위원회의 성격 ·····	1
참고문헌	

1. 국가경찰위원회의 성격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분류

가. 법률상 분류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은 행정 기관 소속 위원회를 ① 행정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과 ② 행정위원회가 아닌 위원 회(자문위원회 등)로 구분하고, 행정위원회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명시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 4. 업무가 계속성 · 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행정안전부의 분류

□ 행정안전부 발행 『2021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행정기관 위원회를 <u>행정</u> 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분류하고 있음¹⁾

〈표 1〉 2021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중 국가경찰위원회

명칭	국가경찰위원회				
소속 및 성격	소속	주관	성격		
	행정안전부	경찰청	<u>자문위원회</u>		
설치근거 및 시행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1991.7.31.)				
위원회 구성일	1991.7.31.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설치목적	주요 치안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	경찰의 주요 치안정책 심의·의결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권				
위원	위원장 : 임명직(대통령), 총 7명 : 위촉(7)				

¹⁾ 행정안전부, 「2021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2021.8., p.394

- □ 행정안전부 운영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또한 행정기관위원회의 유형을 <u>행정위</u> 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하면서²⁾
 - 자문위원회의 경우, <u>위원회 결정의 행정기관 기속 여부에 따라 기속되는 ① 의결위원회,</u> 불기속되는 ② 심의위원회 또는 ③ 심의·의결위원회로 세분하고 있음

〈표 2〉 행정기관위원회의 유형

구분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개념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합의제 행 정기관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
권한	행정기관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권한이 있음 (행정, 준입법 및 준사법 기능 보유하며, 행정권한을 위원회 명의로 직접 행사할수 있음)	행정기관 의사결정을 지원하지만, 대외적으로 표 명하는 권한은 없음
설치요건	① 업무내용이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업무성질이 신중한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③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④ 업무가 계속성 · 상시성이 있을 것	① 업무내용이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 결정할 필요 가 있을 것 ② 업무성질이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세부유형	_	위원회 결정의 행정기관 기속 여부에 따라 기속되는 ① 의결위원회, 불기속되는 ② 심의위원 회로 구분되며, ③ 심의·의결위원회도 있음
사무기구	설치 가능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종합하는 위 원회를 제외하고 설치 불가능

- □ 한편, 법제처는 자문위원회 의결의 행정기관 구속 여부에 대하여 "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반드시 법적으로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음
 - 이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판단의 근거로서 경찰법 제10조제1항의 <u>의무적 심의·의결 규정(제1호)</u> 및 행안부장관의 재의요구권(제9호) 규정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²⁾ 행정안전부 정부조직정보관리시스템(최종검색일: 2022.7.28.)〈https://www.org.go.kr/intrcn/system/view Cmit.do〉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 2.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 · 개선에 관한 사항
- 3.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 4. 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 · 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 6. 제18조에 따른 $\rm I \cdot \Sigma$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 \cdot 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제4항
- 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 7.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 8.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 · 명령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 · 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다. 법제처의 분류

- □ 법제처 발행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은 행정기관 위원회를 행정위원회와 행정 기관위원회가 아닌 위원회(자문위원회 등)로 구분하되, 행정기관 위원회가 아닌 위원회는 <u>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u>와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심의, 자문,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뿐 <u>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자문기</u>관 성격의 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³⁾
 - 참고로, 위원회 규정 방식과 관련하여 <u>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의 기능을 표현할 때에는 "…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 소속으로(또는 ○○부에) △△위원회를 둔다"라는 표현을 사용</u>하되 그 의결이 관계 행정기관을 구속함을 명시하도록 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4), 국가경찰위원회의 경우 표현 방식은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u>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u> 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2) 제언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은 국가경찰위원 회와 달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의 경우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업무를 독립

³⁾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 2021」, p.403

⁴⁾ 앞의 같은 자료, p.409

적으로 수행한다고 명시('20.12.22, 개정)하고 있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가경찰위원회의 성격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경찰법 제7조의 개정을 통해 <u>위</u> 원회의 성격과 업무의 독립성 여부 등을 명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경찰청(국가경찰위원회) 의견5)

□ 국가경찰위원회는 <u>국가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u> 는 입장이며, 지난 2019년 법제처 유권해석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2019년 법제처(법제지원총괄과) 유권해석 주요 내용 〉

[합의제 행정기관 여부]

- ▶ 합의제 행정기관은 ① 합의제 방식의 의사결정 ② 상시적·계속적 · 독자적 사무에 대한 독립 수행 권한 ③ 법률상 설치 근거를 구비 요건으로 함
- ▶ 경찰위원회는 ① 합의제 방식의 의사결정과(7인의 경찰위원) ③ 법률상 설치근거(경찰법)는 갖추고 있음
- ► 다만, ② 독립 수행 권한이란 소관사무를 가지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집행업무도 포함하는 것인데, 경찰위원회는 독자적 사무와 집행 권한이 없으며, 상시적·계속적 업무를 처리한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정부조직법」제5조에 따른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위원회 유형]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유형을 합의제행정기관과 자문기관으로 구분하나,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자문위원회등)로 구분함. 이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의결기관은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자문위원회등)"에 해당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의 기속력]

-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기속력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위원회는 "기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볼 수 있음
- <u>법제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자문기구'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으며</u>,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닌 의결에 기속력이 있는 위원회(자문위원회 등)로 해석하였음
 - ※「행정기관위원회법」제5조는 위원회의 유형을 '합의제 행정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

⁵⁾ 경찰청(국가경찰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회신자료」, 2022.8.2.

로 구분하고 있고,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결기관 등 다양한 유형의 위원회를 포괄하는 개념임

- 아울러, 법제처 유권해석 당시 행정안전부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기관(자문위원회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한 바 있음
 - 한편 <u>행정안전부는 '18.11.30</u>.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명시한 바 있음
 - ※ 보도제목 : 행안부 장관, 경찰청에 「법질서 및 경찰 공권력 엄정 확립 대책」 조속 마련 지시 (경찰위 원회에 대책 마련, 긴급 안건 부의 요청)
- □ 「행정기관위원회법」제5조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요건으로 <u>'업무의 전문성·신중성</u> <u>·독자성·계속성·상시성'을 규정</u>하고 있으며, <u>법제처는 위 요건 중 '업무의 독자</u> 성 및 계속성·상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임
 - 이에 '업무의 독자성'과 관련하여서는, <u>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경찰청장 직무집</u> <u>행의 적법요건을 구성한다는 점</u>에서 경찰청장의 업무와 중복된다고 할 수 없고,
 - 특히, 경찰법 제10조제1항의 심의·의결사항 중 '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 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제4호),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제9호)' 등은 <u>경찰청장의 직</u>무와 내용상으로도 완전히 독립된 사무임
 - 또한, <u>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권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임명 제청권과 분명히 구별되는</u> 독자적 사무이며,
 - '19년 법제처 유권해석 당시에는 규정돼 있지 않았으나,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새롭게 규정된 <u>'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권'(제20조제1항제2호)</u> 역시 국가경찰위원회의 고유한 독자적 사무로서 국가경찰위원회 업무의 독자성을 더욱 뒷받침하는 논거가 될 것임
 - 다음으로, 국가경찰위원회는 '91년 발족 이후 매월 정기회의를 꾸준히 개최해왔으며, ※ '91년 설치 이후 매월 1회 개최 / '18. 9월 이후 매월 2회로 확대 개최

회의개최 현황 ('91. 7. 31. ~ '22. 7. 27. 기준)

▶ 회의개최 : 총 520회 (정기회의 406회, 임시회의 88회, 서면 26회) ▶ 상정안건 : 총 3,775건 (의결 2,556, 보고 1,219) / 회당 약 7.26건

구분	전체 의결 건수 : 2,556건			
의결결과	원안 의결	수정 의결	재상정 의결(보류)	부결
건(비율)	2,013건(78.8%)	411건(16.1%)	129건(5.0%)	3건(0.1%)

-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에 계속적·상시적 업

무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 독립적·안정적으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두도록 한 상임위원이 존재하는 등 '업무의 계속성·상시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임

- 아울러, '81. 4. 8. 개정「정부조직법」제5조에 "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처음 규정되었는데.
- 국가경찰위원회는 '91. 7. 31. 시행된 「경찰법」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로 <u>「정부조직법」</u> 제5조에서 규정한 합의제 행정기관의 요건을 갖춘 만큼 처음부터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 '09. 4. 1. 「행정기관위원회법」시행 시 부칙 제3항에 "이 법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 인 위원회는 이 법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고 규정한 점,
- <u>「행정기관위원회법」제5조에 따르더라도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요건을 모두 충족한</u>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됨

4) 자문의견

□ 해당 질의와 관련하여 복수의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였으며 자문서가 제출된 순서대로 정리하였음

가. 자문답변서 1

- □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안부에 두고 있다고하여 <u>그 소속 때문에 국가경찰위원회가 자</u> 문위원회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위원 임명제청에 있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서 <u>입</u> 법자는 국가경찰위원회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기구로 설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행안부 소속이고 행안부장관이 위원의 임명제청권자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정치적으로 중립일 수 없는 행안부장관에게 종속되어서는 안되는 기구임이 명백하다. 특히 경찰법 제11조 제1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고 규정하여 행안부 소속인데도 행안부가 아니라 경찰청에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안부의 영향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이 치안사무를 주로 관장하고, 행안부장관에게는 이를 견제할 역할만을 부여하여 정치적 개입의 여지를 배제한 현행 경찰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는 입법이다
- □ 경찰법 제10조에 열거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거의 모든 경찰사무를 포괄하고 있는데다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적

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사무 일반에 관한 필요적 심의·의결기관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기관의 성격을 논할 때 자문기관〈심의기관〈의결기관의 순으로 그 결정의 효력을 높게 인정한다. 현행법상 심의뿐만 아니라 의결까지 하는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관을 자문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

- □ 행안부장관도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부의할 수 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적 심의·의결사항이 포괄적이어서 행안부장관에게 주어진 안건부의권은 그야말로 보충적인 권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의요구권은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안부장관의 자문기관에 불과하다면 불필요한 규정이다. 자문기관이라면 그 심의·의결에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재의 요구 또한 필요 없을 것이다. 나아가 행안부장관의 재의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경찰위원회가 원래 심의·의결된 내용을 유지하기로 다시 의결하면 행안부장관은 이 의결에 따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전혀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현재 행안부의 입장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자문위원회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는데, 2005. 12. 31. 행정자치부의 '2006년도정부위원회관리지침'에는 42개 행정위원회의 하나로 행정자치부 소속 경찰위원회가 분류되어 있었다. 6) 언제부터 경찰위원회를 행안부의 자문위원회로 분류하기 시작했는지 확인하지 못했으나, 행안부가 경찰 위원회의 지위나 기능 등에 관하여 자의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행안부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분류하는 종래의 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 □ 이상과 같은 이유로 <u>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사무에 관한 필요적 심의·의결기관으로</u> 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자문답변서 2

- □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법 제7조에 근거하여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동법 제10조 제 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두고 있다
 - <u>법문에 따르면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임이 명백</u>하다. 구 경찰행정자문 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5079호, 1970. 6. 19. 전부개정) 제2조가 경찰행정자문위원회를 단순히 심의권한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점은 더욱 분명하다

⁶⁾ 정부조직법 주해, 2006. 12., 98면.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경우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정부조직법」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 <u>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이 동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나아가 상임위원까지 두고 있는 점을</u> 고려할 때 행정기관위원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위원회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일반적으로 의결기관의 의결이 없는 경우 행정주체의 유효한 의사결정이 행해질 수 없고, 의결에는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의결기관의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의결에 반하는 작용이 있다면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 □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구속력은 법문에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이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학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일부 이론이 있고 <u>행정안전부도 국가</u> 경찰위원회를 자문기구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다. 경찰법 제10조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두도록 하고 있는 것도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의 구속력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자문의견서 3

- □ 현행 경찰법 제10조 제1항에서 경찰의 제반 사무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경찰에 대한 통제의 의미를 갖는다. 즉, 경찰의 독자적인 결정에 일임하는 대신에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걸러질 수 있도록한 것이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통제 기능이 제대로 수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으로 는 위원회의 조직이 제대로 된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는 실제 지난 30여년 동안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된 통제를 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u>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u>서는 대폭적인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다

- □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에는 경찰의 지원에 관한 사항들도 일부 포함 되어 있다. 즉,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을 지원하는 활동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 그러나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원기구로서의 역할도 매우 형식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것 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던 까닭도 있지만,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역시 <u>국가경찰위원회의</u>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참고문헌

행정안전부, 「2021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2021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 2021」

경찰청(국가경찰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회신자료」, 2022.8.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최종검색일: 2022.8.1.)〈https://www.law.go.kr〉

행정안전부 정부조직정보관리시스템(최종검색일: 2022.7.28.)〈https://www.org.go.kr /intrcn/system/viewCmit.do〉



국회임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